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제도개선 권고)

□ 권고 제목 : 노상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

□ 제도개선 권고 취지

○ 「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7조에 따른 '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'에 관한 규정의 개선이 시급

- 폭 20m 이상 도로에 시장이 노상주차장의 설치·관리를 권한 위임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구청장이 폭 20m 이상 도로에 노상주차장의 설치·관리가 불가능

- 너비 6m 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의 구조·설비 기준을 조례에 정하지 않음

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하는 노상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이 미비

□ 사실관계

○ 시장의 권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대구시 조례 제21조 제1항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으나, 구 조례 제7조는 여전히 구청장이 폭 20m 이상 도로의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민원 이송 등 행정력 낭비 발생

○ 너비 6m 미만 도로(주택가 이면도로 등)에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 지장 여부나 재난 구조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조례에 부재하여, 화재 시 소방차 진입 불가 등 안전사고 관련 민원 대처가 곤란함

○ 2015년 시행된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4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50대 이상의 노상주차장에 대해 2~4% 범위에서 조례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정해야 하나, 현재까지 이를 정하지 않아 법령 준수 미흡 및 장애인 단체의 민원 제기 예상

□ 관계 법령 등

- 「주차장법」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
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
- 「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1항, 제21조 제1항
- 「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7조

□ 판단 및 결론

- 행정청의 신뢰 제고 및 민원 이송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실에 부합되게 조속히 조례를 개정
 - 구청장은 너비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·관리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
-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운용
 - 너비 6m 미만 도로에 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긴급자동차의 통행 유효 너비를 확보하고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판단하지 않도록 함
-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(50대 이상 시 3%이상 등)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함
- 위원회에서는 위 사항을 2026. 4. 30.까지 제도개선 권고하였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2025. 12. 31. 조례 개정 완료함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해결)

□ 민원 제목 : 물 고임 현상 발생 보도(인도)의 보수공사 시행 요구

□ 신청 원인

- 2025년 「찾아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」 현장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인이 직접 고충을 토로함
- 신청인 소유 건축물 앞 보도(인도)가 인접 대지 측 보도와의 고저차로 인해 심각한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함.
 -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도 피신청인(담당 부서)이 이를 방치하고 있으니 조속한 보수공사를 요청함

□ 피신청인(담당부서) 등의 주장

- 해당 구간의 물 고임은 자연적인 노후화가 아닌 인접 건축물 소유자의 임의 시공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원인 규명 및 보수 범위 설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
 - 위원회의 현장 확인 결과 주민 불편이 명확하므로,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조속히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임

□ 사실관계

- 현장 조사 결과, 인접 건축물 소유자가 무단으로 공공 보도를 무단으로 높여 시공함으로 인해 신청인 앞 보도 구간에 빗물이 정체되는 현상이 반복된 것으로 판단됨
- 위원회는 주민의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신청인(담당 부서)에게 즉각적인 보수를 권고하였으며, 피신청인은 공사 시행 전 신청인과 공법 및 일정에 대해 사전 협의 후 2025. 11. 30.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확정함 (2025. 11월 초 공사 완료)

□ 관계법령 등

- 해당사항 없음

□ 판단 및 결론

- 보도의 물고임 현상이 제3자의 무단 시공에 의해 발생했음으로 인해 다수 주민의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음이 인정됨

- 원인 제공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별개로, 도로 관리 주체인 피신청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즉각적인 유지보수 의무가 있음

-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보수 일정을 확정하고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점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판단됨.

- 이에 따라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원만히 수용된 것으로 보아 '해결'로 종결함.